

「WON 예금」핵심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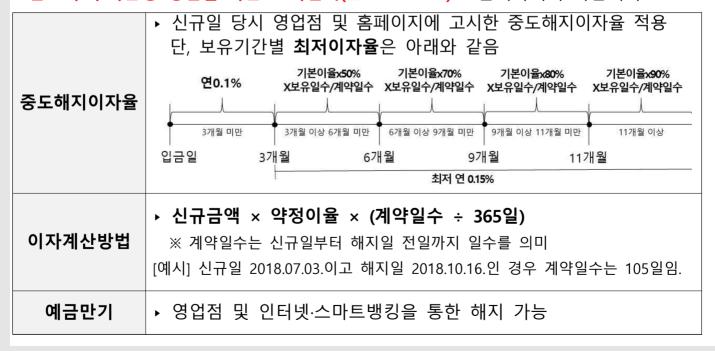


▶ 기본정보

최고이자율	연 2.50%	▶2022.05.27 3년제, 세금납부 전 기준 ☞ 기본이율(연1.25%) + 우대이율(최대 연1.25%p) ▶자세한 우대이자율 제공조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계약기간	▶ 1개월 이상 3	년 이하
가입금액	▶ 1백만원 이상	
분할해지	0	▶ 만기해지 포함 최대 3회 ▶ 분할지급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예금담보대출	0	▶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 가능
예금자보호	0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 유의사항

※ 상품 관련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신 후, 상품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반드시 우리은행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ON 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WON 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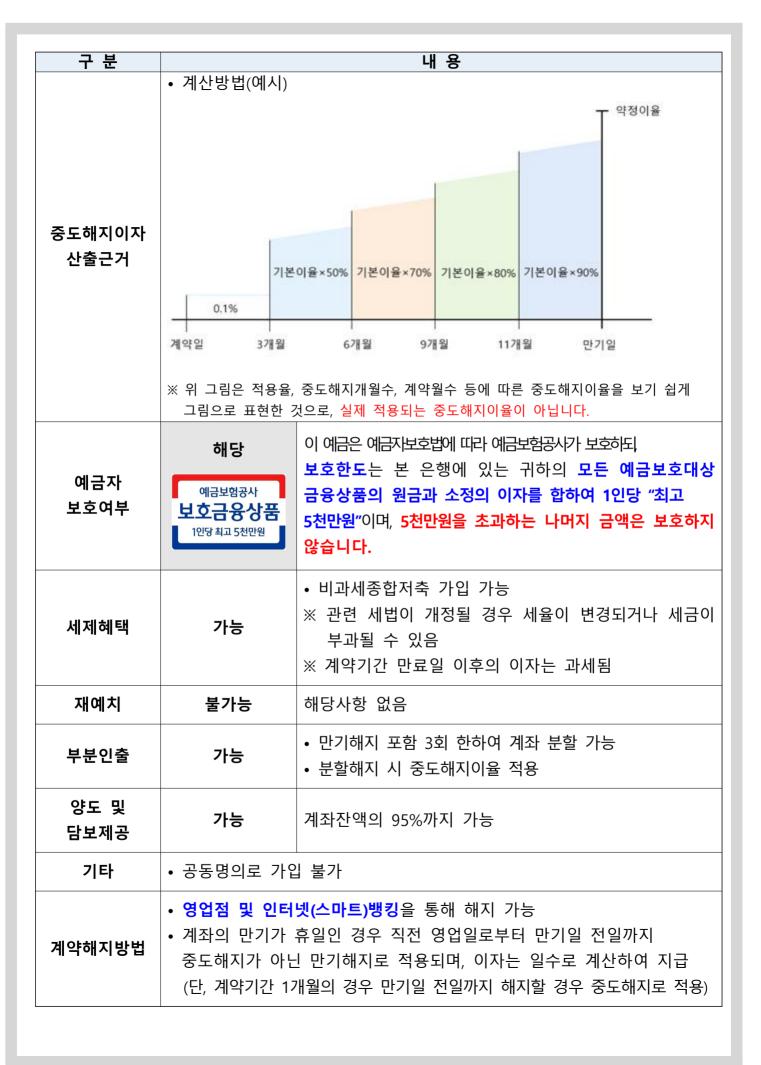
· 상품특징 :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폰 뱅킹 등) 전용 거치식 정기예금 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u>실제 계약</u>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상품유형	• 정기예금						
거래방법	• 신규 : 인터넷(스마트)뱅킹, 텔레뱅킹 • 해지 :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금액	• 1백만원 이상						
계약기간	• 1개월 이상 3년 이하 월 단위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단리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기본금리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22.05.27	최대금리	연 1.50%	연 1.80%	연 2.00%	연 2.40%	연 2.46%	연 2.50%
세금납부 전)	기본금리	연 0.75%	연 0.90%	연 1.00%	연 1.20%	연 1.23%	연 1.25%
	우대금리	연 0.75%	연 0.90%	연 1.00%	연 1.20%	연 1.23%	연 1.25%

			(p) 우리은 현		
구 분					
우대금리	• 만기해지시 신규일 당시 이 예금의 기본금리와 동일한 금리 추가 제공 를 우대이율은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2.05.27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자율 적용				
	경과기간	이 율	비고		
만기후이자율	1개월 이내	만기시점 약정이자율 × 50%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만기시점 약정이자율 × 30%	Y		
	6개월 초과	만기시점 약정이자율 × 20 %			
만기이자 산출근거		(계약일수 ÷ 365일) 해지일 전일까지 일수를 의미 3.이고 해지일 2018.10.16.인 경우 겨	약일수 105일		
중도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에 비해 회전식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 				
해지이자율	보유기간	이 율	비고		
	3개월 미만	연 0.1%			
		기본이자율× 50 %×보유일수/계약일수	* 110110		
		기본이자율× 70 %×보유일수/계약일수 기본이자율× 80 %×보유일수/계약일수	최저이자 율 연 0.15%		
	1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90 %×보유일수/계약일수				



구 분	내 용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3 유의 사항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개인고객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도는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